

식품 중 *Jatropha curcas* L. 기준규격 개정

개정내용

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(EC) No 2015/2283의 12(1)조에 따라 *Jatropha curcas* L.(제조사·사용신청사 : JatroSolutions GmbH)를 다음의 식품유형에 신소재 식품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개정함.

시행 규정(EU) 2017/2470의 부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됨:

식품 유형	최대사용량	비고
시리얼 바	5g/100g	
아침식사용 시리얼	5g/100g	
※ 보호 기간(5년간) 동안 후속 신청자가 신소재식품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는 한, “JatroSolutions GmbH”의 <i>Jatropha curcas</i> L.에 한함		

시행일 : 2022. 7. 10.

(유럽 연합 관보의 게재일 2022. 6. 21.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발효)